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51.320.81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직장보육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홍보영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출산보육과장) 등 149개소, 대구광역시교육감(유아특수교육과장) 등 57개소, 창원소방본부장(소방행정과장) 등 75개소, 국립부산과학관장(경영지원실장) 등 25개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인사총무부장) 등 183개소,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사무국장) 등 51개소, BHS한서병원장(총무팀장) 등 350개소, 가야대학교 총장(사무처장) 등 192개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인사노무실장) 등 247개소,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사장(인사총무팀장) 등 166개소

연구원	서민정	센터소장	전미경	전결 02/07
협조자	시행 일가정양립지원부-616 (2025.02.07.)	접수		
우 4696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5	/		
전화 0513208184	전송 0505-439-1200	/island@comwel.or.kr	/	대국민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포함)

② 지원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내역】

설치형태		지원종류	한도액	지원내용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공동	2~4개소	10억원	
		5개소 이상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60%,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3천만원)	소요비용의 90%

* 영아전담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지원

*** 당해 연도 지원금 총액 한도(월세에 한함)

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내역】

지원 대상	월 평균 근무시간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원	121만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원	86만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원	52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

구분	월 지원금 한도				
보육 현원	39인 이하	40~59인	60~79인	80~99인	100명 이상
지원금액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 지원

- (긴급 돌봄이란) 영유아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영유아 부모의 야간·휴일 근무 등 긴급한 돌봄 수요로 인한 보육활동
 - * △의료 및 간호, △기준보육시간 외 돌봄, △등·하원 지도, △보육교사 공백에 따른 돌봄 등
- (지원 대상)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 단체, 인근 중소기업이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 공단의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되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고용노동부 예규 제2조제14호)

【긴급 돌봄 지원내역】

구분	긴급 돌봄 근로시간	1인당 월 지원금액	비고
인건비	주 15시간 이상	52만원	1개소 당 최대 5인 이내
	주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4만원	
	주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7만원	
운영비	긴급 돌봄 인건비 지원인원에 따라 월 10~30만원		

* 긴급 돌봄 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과 동일하게 1인당 월 52~138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설치비) 직장어린이집 등 공사계약서의 착공일, 시설매입 또는 임차계약서의 계약 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비)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운영비는 매 분기분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 월) 14일까지 신청

4 유의사항

-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참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중소기업이 지자체, 대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설치비를 최대 20.7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가 100분의 60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 부지 또는 건물을 무산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 참여 가능

※ 사업주 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대표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대표
-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공모 신청방법

- 공모시기 : 연 5회(합동공모 1회 포함)
- 신청접수 : e나라도움 및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공모선정 및 지원절차

